

#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대상 확대 동의안

의안 번호	8-469
----------	-------

제출년월일 : 2020. 10.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의 대상을 차상위·법정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약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역사회 인재육성 및 역량강화를 통하여 교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관련조례

-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제4조(지원대상)
  -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한정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을 변경(단계별 확대) 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주요내용

- 지원단계 확대 (1단계 ⇒ 2단계)

구 분	대 상	비 고
1단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학생, 다자녀가정	2020년
2단계	1단계, 차상위, 법정 한부모가정	2021년
3단계	1·2단계, 소득분위 6분위 까지	
4단계	전체 대학생	

## 그 밖의 참고사항

- (붙임1) 관련조례 1부.
- (붙임2) 관련사업계획서 1부.
- (붙임3) 예산수반사항 1부.

##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를 교육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지역사회 인재 육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상 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3. "등록금"은 학교 등록에 필요한 필수경비(수업료, 입학금)를 말한다.
4. "본인부담 등록금"이란 대상 학생에게 부과되는 등록금 비용 중 제5조에 따른 지원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5.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이란 제4호에 따른 본인부담 등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6.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을 말한다.

[본호신설 2020.5.20.]

제3조(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등)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전년도 사업성과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 대상) ①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대상은 지급 기준일 현재 안산

시(이하 “시” 라 한다)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이하 “거주요건” 이라 한다) 29세 이하의 대상학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20.5.20.>

1.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원 1인 이상과 함께 거주하는 대상 학생 <개정 2020.5.20.>

2. 가족관계등록부상 가구원이 없는 대상 학생

② 제1항의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대상 학생의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로 한정한다.

③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을 지원함에 있어 다자녀가정 학생, 장애인 학생,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지원 한다.<개정 2020.5.20.>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한정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을 변경(단계별 확대) 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지원 금액 등)** ①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은 등록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학자금을 지원받는 금액

2. 대상 학생 또는 대상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학교 또는 직장 등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는 금액

3. 그 밖의 방법으로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그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대가성 장학금

2.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3. 이에 준하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한 경우

③ 지원횟수는 시 재정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최대 8회로 한다.

④ 학사과정 졸업 후(본 조례를 통해 지원받지 않은 졸업생을 포함한다) 동급 대학에 재진학 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4년제 대학 졸업 후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에 재 진학하는 경우에도 지급하지 않는다.)

**제6조(신청인)**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을 지원 받으려는 대상 학생 또는 그 대상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 라 한다)은 시장 또는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신청기관” 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방법)** ① 신청인은 시장이 정하는 신청기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한국장학재단에서 발급하는 장학금 신청확인서
2.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신청서
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금(수업료, 입학금) 지급(미지급) 확인서
4.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5.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6. 제5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② 병원 입원, 장기 여행 등 제1항의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정이 종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기한은 해당 연도 11월 30일로 한다.

③ 신청인은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신청일 이후 지급일까지 주소, 법정대리인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절차)** ① 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 학생의 개인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해당 학생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검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검토서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금액을 제6조에 따른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시기)** 대학생 학자금은 매 반기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업무 위탁)** ① 시장은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에 관한 사업을 「안산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안산인재육성재단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업무가 위탁되는 경우 신청은 (재)안산인재육성재단에 하여야 한다.

**제11조(부당지급에 대한 환수 및 중지)**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2. 지원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3. 제5조에 따라 산정된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금과 중복되는 학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받은 경우

부 칙(2019.11.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2020학년도 등록금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